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10. .
발 의 자	박세진 의원 외 6명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10. .

발 의 자 : 박세진, 강승수, 김재상, 김태근
안주찬, 한성희, 허 복 의원(7명)

1. 제안이유

-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 연령제한을 개정하여 진료 및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확보로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병원조직 운영의 현실화 근거 마련(안 제4조)
 - 병원장의 연령제한 만65세 이하를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의료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병원장의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하고, 병원급”을
“병원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및 운영) ①구미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 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법인의 「민법」 및 특별 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 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 는 자(단, <u>병원장의 연령을 만</u> <u>65세 이하로 하고, 병원급 이</u> <u>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u> <u>한 경력</u> 이 있는 자이거나, 내 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신 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 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 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 ----- ----- <u>병원급</u> ----- -----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 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⑩ 생략